



**KFA**  
Korea Football  
Association

**대한축구협회**  
**FIFA 축구**  
**에이전트**  
**국내관리규정**

KFA Regulations on FIFA  
Football Agents

2026. 4. 21. 제정

**Play ON**



- 2026. 04. 21. 제정



<b>용어의 정의</b>	<b>4</b>
<b>제1장 기본 조항</b>	<b>7</b>
1조 목표	7
2조 범위	7
<b>제2장 에이전트 자격 취득</b>	<b>8</b>
3조 일반 조항	8
4조 자격 요건 준수	8
<b>제3장 에이전트로서의 활동</b>	<b>9</b>
5조 일반 조항	9
6조 대리업무	9
7조 미성년 선수 (Minor) 대리업무	11
8조 수수료 일반 원칙	11
9조 수수료 상한제	12
10조 권리와 의무	13
11조 라이선스 조건에 대한 지속적 준수	15
<b>제4장 클라이언트의 권리와 의무</b>	<b>16</b>
12조 에이전트와의 연결	16
<b>제5장 공개 및 공시</b>	<b>17</b>
13조 공개 및 공시	17
<b>제6장 분쟁</b>	<b>18</b>
14조 관할권	18
<b>제7장 징계 및 제재</b>	<b>19</b>
15조 권한 및 집행	19
<b>제8장 최종 조항</b>	<b>20</b>
16조 일시적 조항	20
17조 언급되지 않은 사항	20
18조 공식 언어	20
<b>부칙</b>	<b>20</b>



## 가나다순

본 규정의 목적상, FIFA 정관, FIFA 선수 지위와 이적에 관한 규정 및 다음 정의에 명시된 용어가 적용된다.

**개인** : 선수 또는 지도자

**거래** : (1) 클럽에 선수를 고용, 등록 또는 탈퇴하는 행위, (2) 협회 또는 클럽이 지도자를 고용하는 행위, (3) 선수가 클럽에서 다른 클럽으로 이적하는 행위, (4) 개인의 고용 조건을 체결, 해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규정** : 본 규정을 뜻하며, 수시로 개정될 수 있음

**기타 서비스** : 축구 에이전트가 클라이언트에게 제공하는 축구 에이전트 서비스 이외의 활동으로서 법률 자문, 재무 계획, 스카우팅, 컨설팅, 초상권 권리, 상업적 계약 협상 등을 포함

**대리 계약** : 축구 에이전트 서비스 제공을 위한 법적 관계 수립을 목적으로 하는 서면 계약

**보수** : 협상된 고용 계약에 명시된 총 금전적 보상으로, 기본급, 계약금, 특정 조건 충족 시 지급되는 금액을 포함. 미래 이적에 대한 보상과 차량, 숙소 또는 통신 서비스 제공 등의 비금전적 보상은 본 총 금전적 보상에는 포함되지 않음

**에이전시** : 한 명 이상의 축구 에이전트를 보유, 구성, 고용하거나 관련 비즈니스 업무의 수단으로 활동하는 조직, 법인, 회사 또는 개인 회사

**영입 단체** : 선수 또는 지도자를 영입하는 클럽 또는 협회



이해관계 : (1) 클럽 업무상 투표권이 주어지는 일반적이고 양도 불가한 개인 회원을 제외하고, 해당 기업의 활동이 수행되는 법인의 수익적 소유권 (2) 직접적/간접적 또는 공식적/비공식적 여부와 무관하게, 법인에 대하여 물질적, 재정적, 상업적, 행정적 또는 기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

접근 : (1) 클라이언트와의 모든 물리적, 대면 접촉, 전자 통신 수단을 통한 접근, (2) 가족이나 친구 등 클라이언트와 연결된 다른 사람 또는 단체와의 직간접적 접근, (3) 축구 에이전트가 다른 사람 또는 단체를 활용하여 위 (1) 또는 (2)에 설명된 방식으로 클라이언트에 접근하는 모든 행위

FIFA 축구 에이전트 : FIFA의 절차에 따라 승인을 받은 축구 에이전트 (이하 ‘에이전트’)

커넥티드 축구 에이전트 : 축구 에이전트는 다음의 경우 다른 축구 에이전트와 연결됨 (1) 축구 에이전트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일한 에이전시에 고용되거나 계약되어있는 경우, (2) 두 명 모두 축구 에이전트 서비스를 제공하는 에이전시의 이사, 주주 또는 공동 소유자인 경우, (3) 결혼, 동거, 형제자매, 부모와 자녀 또는 의붓자녀인 경우, (4) 공식 또는 비공식적으로 축구 에이전트 서비스로 인한 이익 또는 수익을 공유하거나 서비스 제공을 위한 계약 체결 또는 약정을 한 번 이상 한 경우

클라이언트 : 축구 에이전트가 축구 에이전트 서비스를 제공하는 협회, 클럽, 선수, 지도자

특정 거래 : 관련된 모든 당사자가 정의되고 식별된 거래

플랫폼 : 승인 절차, 분쟁 해결 절차, Continuing Professional Development 프로그램(이하 ‘CPD’) 그리고 보고 절차가 이루어지는 FIFA의 디지털 플랫폼



RSTP (Regulations on the Status and Transfer of Players) : 선수 지위와 이적에 관한 규정 (이하 ‘RSTP’) 이며, 수시로 개정될 수 있음

[FIFA 주요 규정 및 기관의 용어 정리]

영문	국문_본 규정 적용
FIFA Regulations on the Status and Transfer of Players	FIFA 선수의 지위와 이적에 관한 규정
FIFA Procedural Rules Governing the Football Tribunal	FIFA 축구 재판소에 관한 절차 규칙
FIFA Statutes	FIFA 정관
FIFA Football Agent Regulations	FIFA 축구 에이전트 규정
FIFA Clearing House Regulations	FIFA 클리어링하우스 규정
FIFA Code of Ethics	FIFA 윤리 강령
FIFA Disciplinary Code	FIFA 징계 규정
FIFA Disciplinary Committee	FIFA 징계위원회
FIFA Ethics Committee	FIFA 윤리위원회
FIFA Football Tribunal	FIFA 축구 재판소

본 규정은 남녀 모두에 적용되며, 단수형 용어는 복수형에도 적용되며 그 반대의 경우도 동일함



## 제1장 기본 조항

### 제1조 (목표)

본 규정은 에이전트가 국내 축구 산업에서 활동함에 있어 직업적, 윤리적 기준을 확립하고, 에이전트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공정성 및 전문성을 보장하며, 이해관계 상충 및 비윤리적 행위로 부터 클라이언트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범위)

본 규정은 계약 체결 시점을 기준으로 클라이언트가 대한축구협회에 등록되어 있거나 국내에 주소지를 둔 경우에 한하여, 다음 사항에 적용한다.

1. 국내 구단 사이에서 행해지는 선수 이적에 관련된 행위
2.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등록, 이적 또는 대리 행위
3. 기타 국제 이적과 관련되지 않은 에이전트 서비스를 포함하는 이적 또는 대리 행위



## 제2장 에이전트 자격 취득

### 제3조 (일반 조항)

- ① 에이전트는 'FIFA 축구 에이전트 규정' 제4조부터 제10조까지의 절차와 제23조의 특별 조항에 따라 에이전트 자격을 취할 수 있다.
- ② FIFA의 에이전트 라이선스는 해당 에이전트가 국내에서 에이전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 제4조 (자격 요건 준수)

- ① 대한축구협회는 에이전트 또는 신청자가 'FIFA 축구 에이전트 규정' 제5조에 따른 자격 요건을 준수하지 않았음을 발견하거나 의심되는 경우 FIFA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② 대한축구협회는 FIFA가 'FIFA 축구 에이전트' 규정 제5조의 자격 요건 준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협조하여야 한다.
- ③ 국내에서 에이전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에이전트는 반드시 대한축구협회 온라인 등록 시스템(이하 'JoinKFA')에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 승인을 받기 위한 절차는 대한축구협회의 별도 지침에 따른다.



### 제3장 에이전트로서의 활동

#### 제5조 (일반 조항)

- ① 오직 에이전트만 축구 에이전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② 에이전트는 ‘FIFA 축구 에이전트 규정’ 제5조를 항상 충족하여야 한다.
- ③ 에이전트는 에이전시를 통하여 사업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단, 에이전트가 아닌 에이전시가 고용한 직원 또는 계약자는 축구 에이전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고 대리 계약 체결을 위하여 잠재적 클라이언트에 접근하여서는 안 된다. 에이전트는 에이전시, 직원, 계약자 또는 기타 대리인이 본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해당 행위에 대한 모든 책임을 가진다.
- ④ 다음에 나열된 자 또는 법인은 에이전트 또는 에이전시의 이해관계를 가질 수 없다.
  1. 클라이언트
  2. 본 규정 제5조에 따라 에이전트가 될 수 없는 자
  3. RSTP 18bis 와 18ter를 위반하여 선수의 등록과 관련된 권리를 직간접적으로 소유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개인 또는 단체

#### 제6조 (대리업무)

- ① 에이전트는 클라이언트와 서면 대리 계약 체결 후 에이전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② FIFA가 승인한 에이전트만 대리 계약 체결을 위하여 클라이언트에 접근할 수 있다.
- ③ 에이전트와 개인이 체결한 대리 계약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계약 기간은 새로 작성된 계약으로만 연장될 수 있으며, 자동 계약 갱신이나 대리 계약의 기간을 최대 기간을 초과하여 연장하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 ④ 에이전트는 동일한 개인과 한 개의 대리 계약만 체결할 수 있다. 에이전트는 개인과 새로운 대리 계약을 체결하거나 기존의 대리 계약을 변경하기 전에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해당 대리 계약 관련하여 별도의 법률 자문을 고려할 것을 서면으로 전달
  2. 해당 개인이 별도의 법률 자문을 받았거나 받지 않기로 결정했음을 서면 확인서로 수령
- ⑤ 에이전트와 영입단체 또는 양도단체 간의 체결된 대리 계약은 최대 계약 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 ⑥ 에이전트는 영입단체 또는 양도단체와 동시에 여러 개의 대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나, 해당 계약은 서로 다른 건이어야 한다.
- ⑦ 대리 계약은 다음의 최소 조건을 포함하여야 유효하다.
  - 1. 당사자들의 이름, 생년월일
  - 2. 기간
  - 3. 에이전트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 4. 제공되는 에이전트 서비스에 대한 설명
  - 5. 에이전트의 FIFA 에이전트 라이선스 번호
  - 6. 당사자들의 서명
- ⑧ 에이전트는 동일 거래에서 일방 당사자에게만 에이전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단, 쌍방의 서면 동의가 있는 경우, 에이전트는 개인과 영입 단체에게 동시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⑨ 에이전트는 동일 거래에서 다음의 당사자에게 동시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 1. 양도 단체와 개인
  - 2. 양도 단체와 영입 단체
  - 3. 동일 거래 내에서의 당사자 전원
- ⑩ 에이전트와 커넥티드 에이전트는 제8항에 따른 예외 경우를 제외하고 동일 거래에서 서로 다른 클라이언트에게 에이전트 서비스 또는 기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 ⑪ 에이전트 서비스 제공에 따라 체결된 모든 이적 또는 고용 계약 건에는 해당 에이전트의 이름, 클라이언트, FIFA 에이전트 라이선스 번호와 서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⑫ 개인은 에이전트의 개입 없이 협상 및 거래를 체결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본 사실은 해당 이적 또는 고용 계약에 명시되어야 한다.
- ⑬ 대리 계약서 내의 아래의 조항은 무효로 한다.
  - 1. 에이전트의 개입 없이 개인이 자율적으로 협상하고 고용 계약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 2. 에이전트의 개입 없이 자율적으로 협상하고 계약하는 개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경우
- ⑭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가 계약 관계를 지속할 것을 기대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당사자는 해당 대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단,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파기하는 당사자는 상대 당사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1. 에이전트 라이선스의 취소 또는 정지
2. 축구 관련 행위에 대한 금지 징계
3. 최소 한 번 이상의 등록 기간 동안 국내 또는 해외에서 신규 선수 등록을 할 수 없는 징계

**제7조 (미성년 선수 (Minor) 대리업무)**

- ① 축구 에이전트 서비스와 관련하여 미성년 선수 또는 그 법적 보호자에게 접근하는 것은 해당 선수가 만 16세에 도달하기 6개월 전부터 가능하며, 해당 선수 법적 보호자의 서면 동의가 있어야 한다.
- ② 미성년 선수를 대리하거나 미성년 선수가 포함된 거래 관련 클럽을 대리하기 위해서 에이전트는 미성년 선수 관련한 FIFA의 CPD 코스를 이수하여야 한다.
- ③ 에이전트와 미성년 선수의 대리 계약은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만 유효하다.
  1. 대리 계약이 ‘FIFA 축구 에이전트 규정’ 제12조 제7항에 따른 최소 조건 충족
  2. 에이전트가 제1항 및 제2항 충족
  3. 미성년 선수 및 법적 보호자의 서명
- ④ 제1항을 위반할 경우 FIFA는 벌금과 에이전트 자격 2년 정지의 징계를 내릴 수 있다.

**제8조 (수수료 일반 원칙)**

- ① 에이전트는 대리 계약에서 합의한 대로 클라이언트에게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
- ② 대리 계약에 따른 수수료는 반드시 에이전트의 클라이언트가 지불하여야 하며, 클라이언트는 지불 행위를 제3자에게 위임할 수 없다.
- ③ 제2항에 대한 유일한 예외 사항은 에이전트가 개인을 대리하는 건에 한하여, 개인과 영입단체 사이에 합의된 연간 보수가 미화 200,000 달러 (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여야 하며, 조건부 지급을 포함하지 않는다. 이러한 경우, 영입 단체는 대리 계약에서 영입 단체가 해당 거래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합의할 수 있으며, 아래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1. 영입 단체에서 개인을 대신하여 지급할 수수료가 개인에 대한 에이전트의 신의성실의무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 또한 에이전트가 영입 단체에 의존하거나 종속되는 결과를 초래



해서는 안된다.

2. 영입 단체가 개인을 대신하여 지불하는 수수료는 개인과 에이전트 간의 대리 계약에서 합의된 수수료보다 높지 않아야 한다.
3. 영입 단체는 본항에 따라 지불한 수수료를 개인의 보수에서 공제할 수 없다.
- ④ 에이전트의 수수료는 청구서(인보이스) 기준으로 지불하여야 한다.
- ⑤ 에이전트는 대리 계약에 사전 명시된 서비스에 해당하는 수수료에 한하여 지불받을 수 있으며, 해당 에이전트 서비스가 시행되는 시점에 대리 계약은 유효한 상태여야 한다. 만일 고용 계약 기간이 관련된 대리 계약 기간보다 긴 경우, 에이전트는 대리 계약이 만료된 후에도 개인의 합의된 고용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고 대리 계약에서 클라이언트와 명시적으로 동의한 경우에는 기존 대리 계약에서 정한대로 수수료를 받을 권리가 있다.
- ⑥ 클라이언트에게 실제로 지급된 보수에 대해서만 에이전트 수수료가 발생한다.
- ⑦ 에이전트는 미성년 선수에게 에이전트 서비스를 제공할 시에는 수수료를 받지 않으나, 국내 첫 번째 프로 또는 후속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⑧ 본 규정 제6조 제8항에 따라 동일한 거래에서 에이전트가 영입 단체와 개인을 동시에 대리하는 경우, 영입 단체는 총 수수료의 최대 50%까지 지불할 수 있다.
- ⑨ 양도 단체는 분할 수령한 각 이적보상금에 대해서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양도 단체는 분할 지급액이 수령될 시 에이전트에게 수령 사실을 고지하여야 한다.
- ⑩ 에이전트는 아래의 경우 고용 계약에 따라 아직 지급되지 않은 수수료를 받을 수 없다.
  1. 고용 계약이 종료되기 전 개인이 다른 영입 단체로 이적하는 경우
  2. 고용 계약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에 의해서 조기 해지되고 에이전트가 해지 시점에 개인을 대리하고 있는 경우

### 제9조 (수수료 상한제)

- ① 에이전트 서비스에 따른 에이전트에 대한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1. 개인 또는 영입 단체를 대리하는 경우 : 개인의 보수를 기준으로 함
  2. 양도 단체를 대리하는 경우 : 해당 거래의 이적료를 기준으로 함
- ② 클라이언트에게 에이전트 서비스를 제공하는 에이전트 수와 상관없이, 에이전트 서비스에 대



한 수수료 상한은 다음과 같다.

구분	수수료 한도	
	개인 연간 보수가 USD 200,000 이하일 경우	개인 연간 보수가 USD 200,000 초과일 경우
개인	개인 보수의 5%	개인 보수의 3%
영업 단체	개인 보수의 5%	개인 보수의 3%
영업 단체 + 개인	개인 보수의 10%	개인 보수의 6%
양도 단체	이적료의 10%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의 기준을 적용한다.

1. 수수료 계산 시 개인 보수에 조건부 지급 항목은 포함하지 않는다.
2. 개인의 보수가 USD 200,000 초과일 경우, 에이전트가 개인 또는 영업 단체를 대리하는 경우 연간 초과 금액에 3%, 에이전트가 개인과 영업 단체를 동시에 대리하는 경우 연간 초과 금액에 6%의 수수료 상한제가 적용된다.
3. 다음의 항목은 이적료에 포함되지 않는다.
  - 1) FIFA RSTP 제17조 또는 별칙2에 의거하여 발생한 계약 내용 위반에 따라 발생한 금액
  - 2) 셀온피 (Sell-on Fee)
- ③ 에이전트 또는 커넥티드 에이전트가 거래 발생 전후 24개월 동안 해당 거래 당사자에게 기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제공된 기타 서비스는 별도 언급되지 않는 한 에이전트 서비스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 ④ 에이전트 또는 클라이언트가 제3항의 추정을 반박하지 못한 경우, 기타 서비스에 대해서 지급된 비용은 해당 거래 에이전트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 제10조 (권리와 의무)

① 에이전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본 규정 제6조와 ‘FIFA 축구 에이전트 규정’ 제12조에 명기된 최소 조항을 포함하는 서면 대리 계약을 체결하는 고객에게 에이전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2. 다른 에이전트와의 전속 계약이 종료되지 않은 클라이언트에 접근하거나 대리 계약을 체

결할 수 없으나, 해당 전속 계약이 종료되기 2개월 전부터는 예외로 한다.

② 에이전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항상 클라이언트의 최선의 이익을 위하여 행동한다.
2. FIFA와 대한축구협회의 관련 규정, 지침 및 결정을 존중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3. 에이전트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이해관계의 상충을 피하여야 한다.
4. 에이전트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관련 계약서에 에이전트의 이름, 라이선스 번호, 서명 그리고 클라이언트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명기하여야 한다.
5. 자격 기간 동안, 'FIFA 축구 에이전트 규정' 제5조 및 제17조에 따른 최소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6. 'FIFA 축구 에이전트 규정' 제7조 및 제17조에 따라 정해진 기한 내 플랫폼에 연간 등록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7. 'FIFA 축구 에이전트 규정' 제9조 및 제17조에 따른 CPD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8. 제4항에서 설명된 지속적인 공개/공시 및 보고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9. FIFA와 대한축구협회의 관련 규정(본 규정을 포함한다), 지침 및 결정을 위반할 시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③ 에이전트는 다음과 같은 행위에 관여하거나 시도하여서는 안 된다.

1. 정당한 사유없이 고용 계약을 조기 해지하거나 계약상 의무 이행을 위반하도록 유도할 목적으로 개인에게 접근하거나, 협상을 하거나, 어떠한 조치를 취하거나, 당사자 간 논의를 유도하거나 촉진하는 행위
2. 직간접적으로 부당한 개인적, 금전적 또는 기타 이득을 다음 대상자에게 제공하거나 지급하는 행위
  - 1) 에이전트 서비스와 관련된 협회, 클럽 또는 단일리그의 오피셜 또는 직원
  - 2) 에이전트와 대리 계약을 맺은 개인 (또는 가족 구성원, 법적 보호자, 친구 등)
3. 클라이언트에게 주요 사실을 숨기는 행위
  - 1) 이해관계의 상충 (본 규정에 따라 이해 상충이 허용되는 경우에도)
  - 2) 클라이언트에게 제공된 서면 제안(전달 방법 무관)을 보고하지 않는 경우
4. 기타 서비스로 인하여 클라이언트에게 청구 또는 청구되었을 수수료를 증액하여 본 규정에 명기된 수수료 상한제를 직간접적으로 위반하는 행위



5. 선수의 클럽간 이적에 따라 발생하는 이적보상금 또는 훈련보상액(FIFA RSTP 18ter에 명기된 모든 권리를 포함)을 받는 행위
  6. RSTP에 따른 브릿지 이적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거나 RSTP 18bis 또는 18ter에 위반하는 선수 등록에 대한 권리를 소유하는 행위
  7. 기타 FIFA 에이전트 규정 및 본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 ④ 공개 및 보고의 의무 관련, 에이전트는 다음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클라이언트와 관련되어 수령한 공식 서면 제안(전달 방법 무관)을 즉시 클라이언트에게 고지
  2. 클라이언트가 요청시, 대리 계약서 또는 기타 서비스와 관련된 서면 계약서 사본, 고용 계약서 또는 에이전트 서비스와 관련하여 획득한 기타 서면 문서, 에이전트가 관여한 거래와 관련하여 에이전트에게 지급된 모든 종류의 지급 내역이 상세히 기재된 문서를 제공
  3. 요청 시, 모든 형태의 정보 요청과 관련하여 FIFA 또는 대한축구협회에 협조

**제11조 (라이선스 조건에 대한 지속적 준수)**

- ① 에이전트의 자격 요건은 ‘FIFA 에이전트 규정’ 제17조에 따라 유지되며, 에이전트가 다음의 항목을 위반할 경우 라이선스는 자동으로 일시 정지된다.
1. 자격 요건 충족
  2. 플랫폼에 명기된 기한 내 FIFA에 연간 등록비 납부
  3. 한 해 동안 CPD 요건 준수
  4. 보고 의무 준수
- ② FIFA 사무국은 제1항의 요건 준수 여부를 조사할 책임을 가진다.
- ③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FIFA 사무국은 자격 요건 미충족으로 결정되는 사유와 정지 사실을 에이전트에게 고지하고, 해당 사안은 FIFA 징계위원회에 회부된다.
- ④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FIFA 사무국은 규정 미준수 및 자동 일시 정지 사실을 에이전트에게 고지하고, 자동 일시 정지 후 60일 이내에도 해당 미준수 사항이 개선되지 못할 경우, 라이선스는 취소된다.



## 제4장 클라이언트의 권리와 의무

### 제12조 (에이전트와의 연결)

① 클라이언트는 아래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이적, 고용 등의 계약 체결 등을 직접 진행하지 않을 경우, 에이전트와의 계약을 체결한 후 에이전트를 통하여 에이전트 활동을 제공하도록 할 수 있다.
2. 본 규정과 관련된 대리 계약, 고용 계약 그리고 이적합의서에 따라 합의된 수수료를 에이전트에게 기한에 맞추어 지급하여야 한다.
3. 대리 계약 서명 전, 에이전트가 FIFA 승인을 받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4. 에이전트와 관련한 FIFA, 대한축구협회 또는 관련 기관의 요청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5. 클라이언트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지급 관련 (보수, 수수료, 비용 등) 세부 내역을 에이전트에게 요청할 수 있다.
6. 본 규정 위반 사항 발생 시 FIFA, 대한축구협회 또는 관련 기관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② 클라이언트는 다음과 같은 행위에 관여하거나 관여를 시도할 수 없다.

1. FIFA로부터 승인받지 않은 자를 에이전트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임명하는 행위
2. 에이전트로부터 부당한 개인적, 금전적 또는 기타 이득을 받거나 요청하는 행위
3. 에이전트(또는 가족 구성원이나 그와 관련된 다른 사람)에게 합의된 수수료 외에 직간접적으로 대가나 약속을 제공, 제안 또는 요구하는 행위
4. 협회, 클럽 또는 개인의 에이전트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
5. 본 규정의 서비스 상한제를 직간접적으로 위반하는 행위
6. FIFA 축구 에이전트 규정 제11조 제4항에 따라 에이전시 또는 에이전트의 업무에 이해관계를 가지는 행위
7. 협회, 클럽 또는 개인이 에이전트와의 대리 계약을 위반하도록 유도하거나 강요하는 행위
8. FIFA 축구 에이전트 규정 위반 사항을 FIFA에 즉시 보고하지 않는 행위
9. 에이전트 또는 에이전시가 이해관계를 갖도록 허용하는 행위
10. 기타 본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 제5장 공개 및 공시

### 제13조 (공개 및 공시)

FIFA는 아래의 항목을 공개하여야 한다.

1. 모든 축구 에이전트의 이름과 세부 정보
2. 에이전트가 대리하는 클라이언트의 정보, 독점 계약 여부, 대리 계약의 만료일
3. 각 클라이언트에게 제공되는 에이전트 서비스
4. 에이전트와 클라이언트에게 부과된 모든 징계
5. 에이전트를 포함한 모든 거래에 대한 세부 내역 (에이전트에게 지급되는 수수료를 포함)



## 제6장 분쟁

### 제14조 (관할권)

- ① 에이전트 또는 클라이언트가 일반 법원에 구제를 요청할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FIFA 축구 재판소’ 의 에이전트 담당실은 다음의 관할권을 가진다.
  - 1. 국제적 차원의 대리 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분쟁 (‘FIFA 축구 에이전트 규정’ 제2조 제 2항)
  - 2. ‘FIFA 축구 재판소에 관한 절차 규칙’ 에 따라 제소가 제기된 경우
  - 3. 분쟁의 원인이 된 사건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이 시한 적용 여부는 각 사안에 대하여 직권적으로 검토
- ② 분쟁 해결을 위한 세부 절차는 ‘FIFA 축구 재판소에 관한 절차 규칙’ 에 따른다.
- ③ 에이전트 또는 클라이언트가 일반 법원에 구제를 요청할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 규정 제2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대한축구협회 등록관리위원회는 국제적 차원이 아닌 대리 계약에 대한 분쟁을 결정할 관할권을 가진다.



## 제7장 징계 및 제재

### 제15조 (권한 및 집행)

- ① ‘FIFA 징계위원회’ 또는 ‘FIFA 윤리위원회’는 ‘FIFA 축구 에이전트 규정’, ‘FIFA 정관’ 및 기타 다른 규정을 위반하는 에이전트에 대해서 ‘FIFA 축구 에이전트 규정’, ‘징계 규정’ 및 ‘윤리 강령’에 따라 징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1. 국제적 차원에서의 대리 계약과 관련된 행위 (‘FIFA 축구 에이전트 규정’ 제2조)
  2. 국제 이적 또는 국제 거래와 관련된 행위
- ② FIFA 사무국은 ‘FIFA 축구 에이전트 규정’ 준수 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1. 정보 요청을 통지받은 당사자는 합리적인 요청이 있을 시 당사자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문서, 정보 또는 기타 모든 성격의 자료에 대한 요청과 보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입수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모든 문서, 정보 또는 기타 모든 성격의 자료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이러한 FIFA 사무국의 협조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 ‘FIFA 징계위원회’로부터 징계를 받을 수 있다. FIFA 사무국이 요청할 경우, 영어, 프랑스어 또는 스페인어로 된 문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2. TMS 또는 플랫폼을 통한 전자 공지, TMS 또는 플랫폼에 제공된 이메일 주소로 보내진 전자 공지는 소통을 위한 유효한 방법으로 간주되며, 기간 제한을 설정할 수 있는 대상이 된다.
  3. 조사 후, FIFA 사무국은 ‘FIFA 축구 에이전트 규정’ 미준수에 대한 사안을 ‘FIFA 징계 규정’에 따라 ‘FIFA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4. 조사 후, FIFA 사무국은 ‘FIFA 축구 에이전트 규정’과 관련된 윤리적 위법 행위에 대한 사안을 ‘FIFA 윤리 강령’에 따라 ‘FIFA 윤리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 ③ 대한축구협회는 대한축구협회에 등록된 계약의 당사자가 아래 각 호의 상황에 대하여 본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대한축구협회 등록관리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 결과에 따라 해당 에이전트에 대해서 등록 효력 정지에 따른 국내 활동 불가 등의 제재를 내릴 수 있으며, 사안의 경중에 따라 FIFA에 추가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1. 국내 구단 사이에서 행해지는 선수 이적에 관련된 행위
  2.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대리 행위



**제8장 최종 조항**

**제16조 (일시적 조항)**

① 2023년 5월 'Dortmund decision on FIFA Football Agent Regulations' 에 따른 FIFA Football Agent Regulations의 일부 조항 효력정지 판결에 따라, 본 규정의 제6조 제 8항 내지 제10항, 제8조 제2항, 제6항, 제8항 내지 제10항, 제9조, 제10조 제2항 제2호, 제 8호, 제9호, 제10조 제4항, 제13조 제1항, 제14조, 제15조 제1항 내지 제2항의 효력을 일시 정지하며, 해당 규정의 효력 정지는 FIFA에서 FIFA Football Agent Regulations의 별도 개정 시 까지 유효하다.

**제17조 (언급되지 않은 사항)**

- ① 본 규정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대한축구협회 사무국에서 결정한다.
- ② 본 규정에 영향을 주는 불가항력적인 사안은 대한축구협회에서 최종 결정한다.

**제18조 (공식 언어)**

- ① 본 규정이 발행된 다른 언어의 해석에 불일치가 있는 경우, 한글 규정을 우선으로 한다.

**부칙(2026. 4. 21.)**

본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